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31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곽규택・이헌승・백종헌

주진우 • 서지영 • 정성국

김희정 • 박수영 • 이성권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 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로서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①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	
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	
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	
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u>경우</u>	<u>경우</u>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서 제8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등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
	되는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